

제 249회 임시회  
2006. 5. 1(월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장주식 의원의 6인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49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6. 4. 24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확산함으로써,

○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

-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용어 정의 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·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예우 및 지원 대상과 방법에 규정(안 제3조 내지 제8조)
- 우수기업인 지원·육성을 위한 선정방법 및 절차, 지원대상 등을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창업지원, 품질경영 활동지원, 판로지원, 입지지원,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사항 규정 (안 제9조 내지 제13조)
-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기업애로지원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4조 및 제1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순 섭)

- 본 조례안은 장기적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가들에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최근 환율의 급락과 유가의 급등, 노동 임금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황이 깊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수기업인을 선정·시상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 도입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애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, 투자확대와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,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##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#### 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

- 발의일자 : 2006. 4. 24.

- 발 의 자 : 박종갑 의원 외

## 나. 수정이유

- 조례의 용어 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써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함

## 다. 수정주요내용

-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ISO인증을”를 “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”으로 한다.

## 7. 심 사 결 과 : “수정안 가결”

## 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 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4. 24

제안자 : 박종갑 의원외

## □ 수정이유

조례의 용어 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써  
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함.

## □ 수정주요내용

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ISO인증을”를

“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”으로 한다.

#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ISO인증”을  
“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”으로 한다.

□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           2.제4조 제3호의 ‘으뜸기업’ 은 <u>ISO</u>  <u>인증을</u>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           2.-----국제            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----            -----</p>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기업"이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.
2. "기업인"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.
3. "기업지원 관련단체"라 함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##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

제3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"우수기업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
2. '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'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
3. '으뜸기업'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
4. 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5. 기타 신기술개발, 고용증대, 품질경영 향상,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

②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,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같음한다.

제5조(예우 및 지원)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
2. 해외시장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·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
3. 「지방세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을 유예한다. 다만,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4.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
5.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·재정적 지원

②제1항 제2호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6조(예우 및 지원 중단)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.

1.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
3.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·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
4.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

### 제3장 유망 기업 육성

제7조(기업 육성)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제4조 제2호의 ‘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’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
2. 제4조 제3호의 ‘으뜸기업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
3. 제4조 제5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

②우수기업인은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나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③우수기업인의 심사 및 선정은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
## 제4장 기업 활동 촉진

제9조(창업 지원)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, 창업 강좌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품질경영 활동지원) 도지사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으뜸기업 지정사업
2.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
3. 기타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판로 지원) ①도지사는 기업의 판로개척,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·박람회 등 국내·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입지 지원) 도지사는 산업·농공단지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) ①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5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

제14조(해소 노력)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애로 현장의 조사, 중앙정부 건의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.

1. 도의 기업지원관련 실·과장, 시·군의 국·실·과장
2. 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임·직원
3.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시상) 제1항 중 “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”를 “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제39조 (기본지침)①중소기업청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(이하 "기본지침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12.13, 2005.11.8>

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12.13>

제40조 (육성계획의 수립)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12.13, 2002.1.26>

②시·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1997.12.13>

1.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,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
2.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
3.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
5.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

6.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
7.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·도별로 요청하는 사항
8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## 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

제48조 (육성계획의 수립)①시·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법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·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4.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5.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6.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

③시·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·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2.9>

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정부등의 책무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“생략”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
4.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5. “생략”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,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제14조 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<개정 2002.1.26>)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(이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세법

제64조 (세무공무원의 질문, 검사권)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,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.

1.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특별징수의무자
3.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.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